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합10218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나1115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0가합102185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임지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홍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석준

피고C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구, 박혜진

변론 종결2021. 11. 3.

판결 선고2022.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756,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7. 29. 체결한 상표사용권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상표사용료 채무 중 2015. 1. 1.부터 2016. 5. 8.까지 기간에 대한 상표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가 대전 유성구 D, E 지상 건물 중 F호, G호, H호의 미인도로 인하여 피고에게 부담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 중 2019. 8. 7.부터 위 F호, G호, H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피고는 원고가 별지 1, 2 목록 기재 물품을 수거하는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814,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11. 7. 29.자 상표사용권계약에 기한 원고의 4차년도, 5차년도 상표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월 1,170,108원의 부당이득 차임료에 대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주식회사 I 사이에 2011. 4. 19. 체결된 협약에 기초하여 교육 및 연구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4. 22.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51% 지분은 주식회사 I이, 나머지 49% 지분은 피고가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표사용권 계약과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이라 한다).

상표권자 피고와 사용권자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표사용권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정의)

① 본 계약에서 "제품"이라 함은 피고가 보유한 상표권을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본 조 2항의 상표 1, 2를 부착한 교육용 완제품을 의미하며, 상표를 사용하는 구체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필요시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1. 교육용 하드웨어: 전자칠판, 컴퓨터, 시청각 교육장치, 기타 부속장치
2.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교육용 솔루션(학습관리 통합, 교수학습지원, 인터랙티브 학급 연동, 학습콘텐츠 생성), 동영상, 전자서적

② 본 계약에서 "상표"라 함은 피고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한 다음 각 호의 상표를 의미한다.

1. 상표1: J
2. 상표2: K

③ "매출액"이라 함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상업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외 총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비영리 목적의 매출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상표사용료의 지급 등)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5. 9.부터 2016. 5. 8.까지로 하며, 본 계약에서 "계약년도"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1. 1차년도: 2011. 5. 9. ~ 2012. 5. 8.
2. 2차년도: 2012. 5. 9. ~ 2013. 5. 8.

3. 3차년도: 2013. 5. 9. ~ 2014. 5. 8.

4. 4차년도: 2014. 5. 9. ~ 2015. 5. 8.

5. 5차년도: 2015. 5. 9. ~ 2016. 5. 8.

④ 본 계약과 관련 상표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기로 약정한다.

1. 원고는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원고의 보통주식 14,700주를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 원고는 4차년도 및 5차년도의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0.5%를 상표사용료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⑥ 상표사용료는 4차년도부터 결산회계연도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피고가 별도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⑧ 원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2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상표사용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피고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⑨ 피고는 필요에 따라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가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상표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원고의 제반 서류를 요청 및 조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 제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보통주식 14,700주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분 49%(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4,7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68,393,34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8. 지급명령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차전31909호,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체결한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에서, 4차년도 및 5차년도의 상표사용료는 매출액의 0.5%로 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4. 5. 9.부터 2014. 12. 31.까지 매출액'에 대한 상표사용료 13,777,584원을 2015. 7. 17.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상표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

③ 원고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매출액은

12,435,152,917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표사용료는 위 매출액 12,435,152,917원에 0.5%를 곱한 62,175,765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면 68,393,341원이다. 피고는 2016년도 매출액에 대한 상표사용료는 별도로 청구하기로 하고, 우선 2015년도 매출액에 대한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구한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부금 지급

- 1) 한편 원고는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36회로 나누어 피고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을 '산학협력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였다(이하 '1차 기부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1차 기부금과는 별도로 2012. 3. 19.부터 2012. 3. 19.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5,000,000원을, 2013. 9. 27.부터 2014. 8. 5.까지 2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20,000,000원을 '학과/산업디자인학과 기부금' 등의 용도로 기부하였다(이하 '2차 기부금'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건물 입주계약과 관련 소송의 경과

- 1) 피고는 2013. 3.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건물 중 17개 호실을 '입주기간 2013. 3. 1.부터 2023. 2. 28.까지,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 매월 3.3㎡당 18,000원, 전기사용료 및 LAN사용료는 실비 정산'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차 입주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3. 1. 원고와 사이에, 위 17개 호실에 3개 호실을 추가한 20개 호실을 '입주기간 2014. 3. 1.부터 2017. 2. 28.까지, 관리비 명목의 창업보육비 매월 5,210,430원, 전기사용료 및 LAN사용료는 실비 정산'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2차 입주계약'이라 한다).
- 3) 제2차 입주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피고가 시행하는 계약연장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연장평가 실시를 통보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제1차 입주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는 10년의 입주기간을 보장받았으므로 입주계약 연장평가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연장평가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 4)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14. 및 2017. 3. 8. 2차례에 걸쳐 입주계약 연장을 위한 3개

조건(상표사용료 미납금 지급 완료, 창업보육비 미납금 지급 완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공)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요구한 2017. 3. 27.까지 위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17. 4. 5. 원고와의 입주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원고가 입주한 호실을 2017. 5. 31.까지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6. 9.분 이후부터 2017. 5.분까지의 창업보육비 41,683,490원, 전기사용료 9,926,290원 합계 51,609,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① 원고가 입주한 20개 호실의 인도, ② 2017. 6. 1.부터 위 20개 호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210,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 ③ 미납 창업보육비와 전기사용료 51,609,78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15572호).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8. 4. 19.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선행 1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선행 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선행 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으로 위 20개 호실 중 F호, G호, H호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호실은 2018. 7. 19. 피고에게 인도되었다.

7) 선행 1심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1. '원고의 20개 호실 인도의무, 20개 호실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 미납 창업보육비와 전기사용료 지급의무'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해당 부분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나106393호, 이하 '선행 2심판결'이라 한다)은 2019. 8. 3. 확정되었다.

① 피고는 원고의 49% 지분을 보유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소정의 주요주주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는 상법 제398조 제1호에 따라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1차 기부금을 기부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부는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자동채권의 존재).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미납 창업보육비와 전기사용료 채권 합계 51,609,780원, 2) 2017. 6. 1.부터 위 20개 호실 중 17개 호실이 가집행으로 인도된 2018. 7. 19.까지 20개 호실에 대하여 매월 5,210,4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70,929,584원, 3) 2018. 7. 20.부터

원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9. 3. 22.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3개 호실에 대하여 매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 9,474,364원 합계 132,013,728원의 채권을 가진다(수동채권의 존재).

③ 위 두 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수동채권의 성립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개 호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가집행으로 인도되지 않고 남은 3개 호실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3개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판결

1)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L은 2016. 10.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7. 9. 27.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16고합388호 등. L은 일부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다).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이 사건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고합388』 범죄사실 중 제1항 일부 발췌

L은 2011. 4.경부터 피고 M시설 내 부속건물에서 피고가 수행하는 교육연구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피고에게 지분 49%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의 명칭이 포함된 상호인 'J' 등의 사용권한을 인정받아 이를 기반으로 일선 학교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교육용 콘텐츠 판매사업을 해왔고, 이와 별도로 원고와 동일한 장소에 소재지를 둔 주식회사 N(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O, P 등 관계회사들을 운영해 오던 사람이다.

L은 원고가 'Q'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활용하여 '원고는 피고의 1호 자회사이고, 최첨단 미래형 터치스크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용 솔루션인 R 시스템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세계 전역에 보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홍보에 주력해 왔고, 이를 위해 정관계 유명 인사들의 피고 방문행사, 피고와 국내외 유명 기관들 사이의 MOU 체결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유명 인사들과 촬영한 기념사진 등의 자료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방송출연 또는 연예인을 동원한 대규모 행사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온 결과,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

언론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유일한 자회사로서 연 매출이 수백억 원, 해외 수출물량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유망한 벤처기업으로서 조만간 나스닥 또는 런던 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에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라는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널리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언론 보도내용과는 달리 수천만 달러 상당의 해외 수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도 아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은 2012년도 15억 1,800만 원, 2013년도 21억 8,000만 원, 2014년도 46억 8,800만 원, 2015년 124억 3,5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신고된 매출액 중에서도 2013년도 9억 원, 2014년도 38억 700만 원, 2015년도 101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액은 L이 지배하고 있는 N, S, T 등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로 신고된 것으로서 위 관계회사는 실체가 없거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회사들이고, 위 매출액은 대부분 L이 위 관계회사 등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자금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 간 거액의 자금을 임의로 회전시켜 가공의 거래를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원고는 온라인 교육용 솔루션을 일선 학교 등에 판매하여 연 2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것이 유일한 수입원이었고, 그 이외 원고가 주력 상품이라며 홍보해 오던 테이블 형태의 컴퓨터(일명 'U')는 제품홍보를 위해 소량의 주문생산이 되고 있었을 뿐, 양산 시스템을 갖추었거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으며, N 등 L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원고가 매월 지출하는 비용은 인건비만으로도 약 2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는 전체 매출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도 못하던 상황이었고, 그 이외 회사가 지출하는 각종 임차료, 광고비, 행사비, 접대비 등 거액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규 자금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L은 원고를 통해 추진하던 대규모 수주, 해외 수출 시도 등이 대량 생산 설비의 부존재,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매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원고의 실제 연 매출액이 온라인 교육용 솔루션을 일선 학교 등에 판매하는 연 20억 원 미만의 수준에 불과한 상태로 별다른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더 유치하거나 상장 등을 준비하기 위해 원고가 상당한 매출 실적을 올리며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게 되자, 원고의 인건비 등 비용 지출을 위한 자금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할 때마다 L이 운용하는 다른 회사의 계좌를 거쳐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원고의 실제 매출인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L이 운영하는 회사들 간의 자금 이체에 맞추어 마치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기로 하였다.

『2017고합43, 164』 범죄사실 중 제1항 일부와 제2항 발취

1. 피고인 L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원고는 2013. 10. 23.경 원고의 사무실 등지에서 대표이사 L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030,909,08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장을 발급, 수수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 행위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2.경 원고의 사무실 등지에서 대표이사 L이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T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43,727,272원 상당의 'R 솔루션'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44,997,39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5장을 발급, 수수함으로써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 행위를 하였다.

2) 원고와 L은 위 형사 1심판결에 항소하였고, 2018. 3. 30.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L은 형량만 변경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17노424호). 위 판결은 2018. 9. 13.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원고 소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선행 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으로 원고가 입주한 17개 호실을 인도받으면서, 선행 지급명령과 선행 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호실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77개 품목을 압류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12. 4. 압류한 원고 소유의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 5,051,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고, 피고는 선행 지급명령의 채권 2,677,502원, 선행 1심판결의 채권 2,373,498원 합계 5,051,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대전지방법원 V, W).

2) 피고는 선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9. 6. 원고가 입주한 호실과 그 밖의 피고 소유

건물에 있던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36개 품목을 압류하였다(대전지방법원 X).

3) 원고는 2020. 2. 4. 피고를 상대로 선행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9. 15.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995호,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 2021나121736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의 존재

한편 원고와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6293, 대전고등법원 2018나13620, 대법원 2019다245662호 부정경쟁행위 등 금지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위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20. 6. 3.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380,572원임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0라146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7, 26, 35, 39, 48, 51 내지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금전지급청구 부분 ① 피고는 선행 2심판결에서 인정한 1억 8,0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중에서 미납 창업보육비와 전기사용료 51,609,78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 80,403,948원 합계 132,013,728원과 상계되고 남은 47,986,272원(= 1억 8,000만 원 - 132,013,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주요 주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거래를 할 때에는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사회 승인 없이 피고에게 2차 기부금 55,000,000원을 기부하였으므로, 위 기부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4차년도 상표사용료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13,777,584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상표사용료는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매출'이 아니라 기술판매가 대부분인 매출액의 0.5%로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출액에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가공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3,777,584원의

상표사용료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13,777,5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선행 지급명령은 위 ③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고, 선행 1심판결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 피고는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을 매각하고 5,051,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5,051,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피고는 위 ① 내지 ④의 합계 121,814,856원(= 47,986,272원 + 55,000,000원 + 13,777,584원 + 5,051,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표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피고는 4차년도, 5차년도 상표사용료 채권이 68,393,341원이라고 주장하며 선행 지급명령까지 받았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표사용료 채권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매출'이 아니라 기술판매가 대부분인 매출액의 0.5%로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매출액에는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가공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차년도, 5차년도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선행 2심판결 직후인 2019. 8.경 피고에게 인도되지 않은 3개 호실을 인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미납한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원고는 2017. 9.경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되었고, 원고 대표이사가 2016. 9.경 구속되어 모든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위 3개 호실을 사용·수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유체동산의 인도청구 부분 원고가 입주한 3개 호실에는 별지 1, 2 목록 기재 물품이 있었는데, 피고는 3개 호실에 있는 물품을 치우고 3개 호실을 인도하겠다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위 물품을 압류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상표사용료 채권이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더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

1) 부당이득금 47,986,272원 반환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 1차 기부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1차 기부금을 지급할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 원고는 선형 2심판결에서 1차 기부금 지급이 무효여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선형 2심판결에서 상계하고 남은 47,986,272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는 원고가 1차 기부금 지급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1차 기부금 지급은 유효하고,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요 주주로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가 아니므로 이사회 승인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2005다65180 판결 등의 법리를 유추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요 주주로서 1차 기부금 지급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려면 1차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1차 기부금을 지급할 당시 주주인 주식회사 I과 피고가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회 승인이 없더라도 1차 기부금 지급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2호증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은 개인 3명, 법인 2개가 주주인 회사로서 1차 기부금 지급 당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2명,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1차 기부금 지급에 관하여 동의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현행 상법 제398조는 회사와 주요주주 사이의 자기거래에

있어서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가 주주 전원의 동의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리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밝혀진 상태'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원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I에게 1차 기부금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부당이득금 55,000,000원 반환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하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사실, 피고가 2012. 3. 19.부터 2012. 3. 1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 2013. 9. 27.부터 2014. 8. 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의 2차 기부금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차 기부금을 지급할 당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은 갑 제5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Y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2011. 4. 14.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상법 제398조는 주요주주와 회사 사이에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부칙(2011. 4. 14. 제10600호) 제2조는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는바, 2차 기부금 중 35,000,000원 부분은 현행 상법 제398조가 시행되기 전의 거래여서 원고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유효하고, 나머지 20,000,000원 부분은 현행 상법 제398조에 따라 원고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1)항에서와 같이 ① 원고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하여 기부가 유효하다. ②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③ 원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 기부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상표사용료 13,777,584원 반환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을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의 0.5%를 상표사용료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의 4차년도 중 일부인 2014. 5. 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 2,755,516,741원의 0.5%인 13,777,584원을 상표사용료로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L은, 원고와 L이 운영하는 관계회사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유죄판결에서 2014. 5. 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2,318,181,807원인 사실(갑 제52호증 중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은 갑 제52, 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 13,777,584원 중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함으로써 인해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 2,318,181,807원에 대한 상표사용료 11,590,909원($= 2,318,181,807\text{원} \times 0.5\%$)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90,90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상표사용료 2,186,675원(=

13,777,584원 - 11,590,909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기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상표사용료 13,777,584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알았는지 여부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유체동산 매각대금 5,051,000원 반환청구 부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68,393,341원의 상표사용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아래 라.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3개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의 선행 2심판결에서 인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2019. 3. 23.부터 2019. 8. 7.까지 4개월 16일에 대하여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은 5,284,359원[= 1,170,108원 × (4 + 16/31)]이므로, 피고는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을 차임 상당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유할 권원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상표사용료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상표권을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의 0.5%를 상표사용료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 제2조 제1항 제4호의 4차년도 중 일부인 2015. 1. 1.부터 2015. 5. 8.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 3,557,487,503원과 5차년도 중 일부인 2015. 5. 9.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매출액 8,877,665,414원의 합계액 12,435,152,917원에 0.5%를 곱한 62,175,765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6,217,576원 합계 68,393,341원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와 원고 대표이사 L은, 원고와 L이 운영하는 관계회사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유죄판결에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는 10,479,999,969원인 사실(갑 제52호증 중 2015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참조)은

갑 제52, 5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행 지급명령을 받은 상표사용료 채권 68,393,341원 중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함으로 인해 장부상 계상된 매출액 10,479,999,969원에 대한 상표사용료 52,400,000원(= $10,479,999,969원 \times 0.5\%$)은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상표사용료 15,993,341원(= 68,393,341원 - 52,4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제품 매출액이 아니라 기술용역 매출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의무를 부인하는바,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상표사용료 15,993,341원이 '피고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 매출액'에 대하여 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상표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상 5차년도 전부에 대하여 상표사용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 5. 8.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상표사용료 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2016. 1. 1.부터 2016. 5. 8.까지의 상표사용료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108863 판결 등은 채무부존재확인소의 목적이 오로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부분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해 집행력 배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채무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상표사용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도 다투고 있으므로, 이미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중복제소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나.항의 3)에서와 같이, 원고가 장부상 허위의 매출을 기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위 상표사용료 채권 68,393,341원은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만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상표사용료 채권이 불법원인급여라면, 피고도 원고에게 상표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여기에서 이익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 240431 판결 등 참조).

확정된 중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 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1차, 제2차 입주계약에 의하여 20개 호실을 임차하였다가 17개 호실은 선행 1심판결에 기초한 가집행으로 2018. 7. 19. 피고에게 인도되고, 나머지 3개 호실은 현재까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 선행 2심판결 주문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3.부터 3개 호실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은 2019. 8.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1, 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선행 2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9. 8. 7.경 피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3개 호실에 보관 중인 물건을 모두 치우고 3개 호실을 비워 주겠으니 3개 호실에 출입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직원은 창업보육비 미납금, 상표사용료 미납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는 3개 호실에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0, 31,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경 대표이사 L이 구속된 후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2017. 9.경 국세청으로부터 직권 폐업 통지를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3개 호실을 인도할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3개 호실에 출입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2019. 8. 7. 이전까지는 선행 2심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3개 호실을 실제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3개 호실 안에 원고 소유 물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마. 유체동산의 인도청구 부분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입주한 호실의 인도를 두고 소송을 하다가 17개 호실이 2018. 7. 19. 피고에게 인도되고, 나머지 3개 호실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인도되지 않은 3개 호실에 별지 1, 2 목록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특별히 다투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3개 호실에 남아 있는 물품을 옮기고 3개 호실을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3개 호실의 출입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미납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점유하던 3개 호실이 위치한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3개 호실 출입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3개 호실을 인도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동산의 인도청구는 그 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므로 피고는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의사는 원고가 피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원고가 피고의 출입 거부로 인해 소유권의 행사에 방해받고 있음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수거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기로 한다(만약 이 사건 유체동산에 압류 등의 제한이 걸려 있다면, 원고는 자신의 책임으로 그 제한을 풀고 점유를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차 기부금 중 47,986,272원, 2차 기부금 중 20,000,000원, 상표사용료 중 11,590,909원 합계 79,577,18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상표사용 계약에 기한 2015. 1. 1.부터 2016. 5. 8.까지 기간에 대한 상표사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2019. 8. 7.부터 3개 호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피고가 위 상표사용료 및 부당이득 반환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수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상표사용료 채권 68,393,341원과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답변서 부분의 송달로써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액 채권 14,380,572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021. 1. 1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자동채권의 존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표사용료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앞서 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8. 7.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 1,170,108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5,284,359원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2.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그 중 5,051,000원은 앞서 2.의 다. 4)항에서와 같이 2018. 12. 4. 피고가 유체동산 매각대금으로 변제 충당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33,359원의 채권이 남아 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6. 3. 확정된 소송비용액 채권 14,380,572원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수동채권의 존부 앞서 2.의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 79,577,181원 채권과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서 그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9. 9. 20.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상계충당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충당방법에 관하여 약정하거나, 피고가 수동채권을 지정하여 상계하지 않았으므로, 상계충당의 순서는 민법 제477조에 따른다. 수동채권은 모두 2019. 9. 20.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4호에 따라 수동채권의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에 충당한다.

먼저 자동채권 중 차임 상당 부당이득채권 233,359원은 수동채권의 이행기인 2019. 9. 20. 원고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적상에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답변서 부분이 송달됨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충당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47,986,272	140,719	47,845,553
2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20,000,000	58,650	19,941,350
상표사용료 관련 부당이득	11,590,909	33,990	11,556,919
합계	79,577,181	233,359	79,343,822

다음으로 자동채권 중 소송비용액 채권 14,380,572원은 그 채권이 확정된 2020. 6. 3. 수동채권인 원고의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및 지연손해금과 상계적상에 있고,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1. 1. 11.자 준비서면이 송달됨에 따라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2019. 9. 20.부터 2020. 6. 3.까지의 지연손해금, 원본 순으로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상계충당의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1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47,845,553	1,684,426	6,987,282	40,858,271
2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19,941,350	702,045	2,912,200	17,029,150
상표사용료 관련 부당이득	11,556,919	406,867	1,687,753	9,869,166

1차 기부금 관련 부당이득	47,845,553	1,684,426	6,987,282	40,858,271
합계	79,343,822	2,793,337	11,587,235	67,756,587

4) 소결론 상계충당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합계 67,756,58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2.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서봉조

판사김가영

판사이정훈

별지